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2025년)

한마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관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등 요양원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망 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동일성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장(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모니터링 담당자”라 함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마음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책임자 지정)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
 - 가. 책임자 : 대표자 문 정 환
 - 나. 운영(담당)자 : 대표자 문 정 환
 - 다. 모니터링(담당)자 :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한마음요양원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의 설치)

① 한마음요양원 CCTV는 총 30대를 설치하며, 설치 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14대(3층 : 7개 침실 각 1대, 4층 : 7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2대

1층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3대	4대	2대	2대	1
프로그램실1, 식당1, 로비1	특별침실2, 복도1 물리치료실(간호사실)1	침실 복도 각1 출입구 복도 각1		

3. 외부공간 4대(현관과 주차장 1, 건물 우측면1, 건물 좌측면1, 건물 뒤편1)

②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의 규격은 201mm×297mm이며, 부착장소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 출입구와 시설입구 담장에 설치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 연락처

제8조(CCTV 성능, 촬영범위 및 시간) 한마음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의 성능, 촬영범위와 촬영시간, 저장, 저장장치 및 열람장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범위 : 제6조 ①항
3. CCTV 촬영 시간: 24시간 상시 촬영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한마음요양원에 있는 DVR

제9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 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3.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관리대장)

- ① 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확인방법과 장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

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영상물(열람·존재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원의 열람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1층 사무실에서 열람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CCTV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제13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 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별지서식목록]

1. [별지 제 2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2.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3.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4. [별지 제 5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5.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6.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7. [별지 제 8호 서식] 정정삭제청구서
8. [별지 제 9호 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 통지서
9.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열람, 제공)
10.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파일 삭제 파기 관리대장
11.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12. [별지 제 13호 서식] CCTV 설 치 안 내
13. [별지 제 1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14. [별지 제 15호 서식]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 ☐ 대표자 귀하</p>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 ○ 대표자 귀하</p>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대표자</p>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3. . . ~ '23.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김영태	1945.5.29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2025.7.19	전이순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25. 7. 19. ~ 2026. 7 . 18.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 ○ ○ 대표자 귀하